

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선정을 위한
기 술 제 안 서 평 가 기 준

2026. 07.



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

1. 개 요

본 평가기준은 「과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」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.

2. 평가방법

가. 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(기후에너지환경부, 2025.10.01.)」 관련규정에 의거 “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” 구성 및 평가 실시

○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(경제성평가 등) 실시

나.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평가

○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

○ 기술제안서의 중대 오류, 허위여부,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검증

○ 기관평가(절대평가) 항목에 대한 평가

○ 감점사항 검토

○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,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등을 재검토하고,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

○ 1차평가(기관평가) 결과 상위 5개 공법 제안사에 대해

2차평가(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평가) 적격대상 업체로 선정하여

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

다.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(기술제안서 평가)

○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한 감점사항에 대한 확정

○ 위원평가(상대평가) 항목에 대한 평가

○ 기술제안서에 허위 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
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

※ 중대한 결함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목표방류수질 이하의 수질기준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,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함이 중대하여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.

○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

○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「기술성 분야」 합계점수가 높은 공법으로 선정하며,

「기술성 분야」 합계점수도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공법을 선정함.
 ※ 공사비 → 유지관리비 → 에너지사용량 → 수질관리의 적정성 → 계획의 적정성
 → 유지관리 용이성 → 가동의 적정성

3. 기본원칙

- 가. 기한내 제출한 공법제안사의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함.
- 나. 유지관리비는 LCC(Life Cycle Cost) 기법으로 산출하여야 함.
- 다. 선정된 공법이 성능보증 문제(계약 불이행, 성능 미충족 등)를 야기한 경우 이후
 우리시가 추진하는 모든 공법선정 기술제안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.
- 라. 기관평가 항목은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,
 사업부서에서 평가함.
- 마. 평점의 계산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하되,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.
- 바. 공법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단가를 설계에
 적용하며, 변경은 불가함.
- 사.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
 - 상대평가는 평가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, 우, 미, 양, 가의
 5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%, 우 90%, 미 80%, 양 70%, 가 60% 등으로
 배정하며, 절대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을 적용함.
 -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 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
 업체에 대하여 동일 등급으로 배분하고,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
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함.
 - 상대평가에 대한 참여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은 아래 표와 같음.

참여 업체수	등급별 업체수 배분					참여 업체수	등급별 업체수 배분				
	수	우	미	양	가		수	우	미	양	가
2	-	1	1	-	-	9	1	2	3	2	1
3	-	1	1	1	-	10	1	2	4	2	1
4	-	1	2	1	-	11	1	2	5	2	1
5	1	1	2	1	-	12	1	3	5	2	1
6	1	1	2	1	1	13	1	3	5	3	1
7	1	1	3	1	1	14	1	3	6	3	1
8	1	2	3	1	1	15	2	3	6	3	1

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배점표

평가항목		배점 기준	세부평가내용	비고
합 계		100	위원평가 : 47점, 기관평가 : 53점	
기술성 분야 (55)	소 계	55		
	1. 계획의 적정성	10	-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 인자의 적정성 -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	위원평가
	2. 수질관리의 적정성	26		
	1) 보증(목표)수질의 적정성	5	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(목표수질) 적정성	기관평가
	2) 부하변동의 대응성	10	-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평가 - 유입부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효율화 계획	위원평가
	3) 수질확보의 안정성	11	-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-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	위원평가
	3.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	10		
	1) 유지관리 용이성	4	-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 - 공공하수도 에너지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	위원평가
	2)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	4	설계, 시공, 운전상의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	위원평가
		2	보증기간에 대한 평가	기관평가
	4. 가동의 적정성	9		
	1)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	4	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 비교·평가	위원평가
	2) 유지관리비의 적정성	4	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교·평가	위원평가
	3) 신기술 보유 유무	1	신기술 보유 유무	기관평가
경제성 분야 (30)	소 계	30		
	5. 공법의 경제성	30		
	1) 공사비	12	공사비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	기관평가
	2) 유지관리비	18	유지관리비 현가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	기관평가
에너지 분야 (15)	소 계	15		
	6. 에너지사용 저감계획	15		
	1) 에너지 사용량	10	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비교 평가	기관평가
	2)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	5	제안된 에너지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	기관평가

※ 위원평가 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함.

※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.

평가항목		평가방법	감점기준	감점 상한
감점 사항	7. 감점사항			
	1) 제안서 작성 관련	•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	1부당 0.2점	1점
		• 제안서 기준페이지(100page) 초과시	1페이지당 0.2점	1점
		• 제안서 규격, 지질 미준수시	각각 1페이지당 0.2점	1점
		• 제안서 사진부착 기준 미준수시	1페이지당 0.2점	1점
		• 제안서 흑백작성 기준 미준수시	1페이지당 0.2점	1점
		• 용량계산서, 수리계산서, 공사비 산출근거,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	1목록당 0.5점	2점
		•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하여 산출시	1건당 0.2점	2점
		•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표기하며,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(문자, 기호, 이미지, 특허번호, 신기술번호, 실적제시 시 해당처리시설 명칭 제시 등)도 불가하며, 표기하여 제출시	5점	5점
	2)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	• 참가업체가 기술심의회원에게 사전설명시	5점	5점
	3) 제안서의 신뢰성 관련	•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- 15% 초과 ~ 20% 이하 : 5점 감점 - 20% 초과 : 10점 감점		
	4)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	• 기술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, 작성지침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.		

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

1. 계획의 적정성(10점) : 위원평가(상대평가)

-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질 특성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
-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
 - 설계인자, 운영인자 및 운전조건의 적정성
 - 용량계산의 적정성
- 처리계통 및 수리계통의 적정성 및 효율성
-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
- 설비 용량 및 대수 산정의 적정성
- 공사기간 중 하수처리 운영계획의 적정성(무중단 운영 등)
-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
- 배점기준

구 분	수	우	미	양	가	비 고
점 수	10.0	9.0	8.0	7.0	6.0	

2. 수질관리의 적정성(26점)

1) 보증(목표)수질의 적정성(5점) : 기관평가(절대평가)

-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(목표수질) 평가
 - 수질항목별(BOD, TOC, SS, T-N, T-P)로 평가하여 합산(수질항목별 1.0점, 5개 항목 합계 5점 만점)
- 평가기준 : 공법제안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
 - 보증수질 비율 = (해당공법의 보증수질 ÷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) × 100
 -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 【첨부양식2】의 성능보증서 요약서(총괄보증서)의 보증수질의 최대값 기준의 보증수질로 평가
 -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사는 성능보증서 요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
○ 배점기준

- 수질항목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함.

구 분		보증수질 비율					비 고
		90% 미만	90%이상~100%미만	100%이상~110%미만	110%이상~120%미만	120% 이상	
점 수	BOD	1.0	0.9	0.8	0.7	0.6	
	TOC	1.0	0.9	0.8	0.7	0.6	
	SS	1.0	0.9	0.8	0.7	0.6	
	T-N	1.0	0.9	0.8	0.7	0.6	
	T-P	1.0	0.9	0.8	0.7	0.6	

2) 부하변동의 대응성(10점) : 위원평가(상대평가)

○ 수질,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

- 유입수의 수질변동(고/저부하), 유량변동(고/저유량) 및 수온변동(동절기, 환절기시)에 대한 운영계획

○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

-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, 난분해성/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시에 대한 대응 및 운영계획

○ 에너지사용 효율성

- 유입부하의 변동에 대응한 에너지사용 효율화 계획

○ 배점기준

구 분	수	우	미	양	가	비 고
점 수	10.0	9.0	8.0	7.0	6.0	

3) 수질확보의 안정성(11점) : 위원평가(상대평가)

-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
-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
 - 설계, 운영인자 및 운전조건의 적정성
 - 용량계산의 적정성
-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
-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
- 배점기준

구 분	수	우	미	양	가	비 고
점 수	11.0	9.9	8.8	7.7	6.6	

3.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(10점)

1) 유지관리 용이성(4점) : 위원평가(상대평가)

-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(통합관리시 포함)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
- 수처리 효율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
- 공공하수도 에너지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에 대한 평가
- 배점기준

구 분	수	우	미	양	가	비 고
점 수	4.0	3.6	3.2	2.8	2.4	

2) 기술지원(4점) : 위원평가(상대평가)

-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, 시공,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
- 배점기준

구 분	수	우	미	양	가	비 고
점 수	4.0	3.6	3.2	2.8	2.4	

3) 보증기간(2점) : 기관평가(절대평가)

○ 보증기간에 따라 평가

-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(처리수질)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

○ 배점기준

구 분	15년 이상	12년 이상~ 15년 미만	9년 이상~ 12년 미만	6년 이상~ 9년 미만	3년 이상~ 6년 미만	비 고
점 수	2.0	1.8	1.6	1.4	1.2	

4. 가동의 적정성(9점)

1)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(4점) : 위원평가(상대평가)

○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중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인 2025년 01월 ~ 2025년 12월의 가동실적을 보유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

○ 국내에 적용된 공공 및 개인 하·폐수처리시설 건수에 따라 평가(준공된 시설만 인정)

-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제출(공고문 참가자격의 용량기준 및 제출기간 참조할 것)

※ 정상가동실적이 없고, 환경신기술 검증(유효기간내)으로 금회 공법선정에 참가한 공법제안사 공법의 경우 신기술 검증서에 제시된 처리효율을 대상으로 평가

※ 정상가동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 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. (정상가동실적 제출건 각각에 대해 해당 건별 발주청과 협약한 ‘기술사용협약서 사본(원본대조필)’ 을 제출하여야 함)

○ 가동 중인 공공 또는 개인 하·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* 및 처리효율**로 상대평가

* 처리수질 : 평균수질, 최고수질, 최저수질 유입시로 구분(개인 하·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 기준으로 산출)

** 처리효율

① 신기술인증기관,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지자체,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.

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(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)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.

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,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.

○ 배점기준

구분	수	우	미	양	가	비고
점수	4.0	3.6	3.2	2.8	2.4	

2) 유지관리비의 적정성(4점) : 위원평가(상대평가)

○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·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

-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

※ 소규모의 경우 무인운전에 따른 순회점검회수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평가

○ 배점기준

구분	수	우	미	양	가	비고
점수	4.0	3.6	3.2	2.8	2.4	

3) 신기술 보유 유무(1점) : 기관평가(절대평가)

○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(검증) 여부에 따라 평가(공법선정 공고일 기준)

- 공공하수도 처리공법 선정 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법에 한정

- 생물학적 처리공법에 한하여 평가하며, 1차처리시설, 3차처리시설(충인처리공법) 등 기타 신기술은 평가에서 제외함.

○ 배점기준

구 분	점수
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	1.0
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	0.5
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	0.0

5. 공법의 경제성(30점)

1) 공사비(12점) : 기관평가(절대평가)

- 공사비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
- 「기술제안서 작성지침」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
 - 도면(P&ID 포함), 수량산출서,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감점 및 평가제외
 -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,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
- 평가기준 : 토목, 기계, 전기 및 계측제어, 기술사용료 등 제안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
 - 비율 = (해당공법의 공사비 ÷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) × 100%
- 배점기준

구 분	70%이상 ~ 100%미만	100%이상 ~ 110%미만	110%이상 ~ 120%미만	120%이상 ~ 130%미만	130%이상 ~ 70%미만
점 수	12.0	10.8	9.6	8.4	7.2

※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에 70%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

2) 유지관리비(18점) : 기관평가(절대평가)

- 유지관리비 현가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
- 「기술제안서 작성지침」 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
- 평가기준 :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, 약품비, 슬러지처리비, 경상수선비, 대수선비, 기타의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
 -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,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
 - 비율 = (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÷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) × 100%

※ 유지관리비 산정방법

- ① 전력비, 약품비, 슬러지처리비, 경상수선비, 기타 등 반복비용

- 매년 발생하는 반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
- 산출방법 : $((1+\text{할인율})^{\text{연한}}-1) \div (\text{할인율} \times (1+\text{할인율})^{\text{연한}}) \times \text{연간 반복비용 합계}$
(전력비, 약품비, 슬러지처리비, 경상수선비, 기타 등)
- 적용 할인율 : 「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(2025.07, 기획재정부훈령 제790호)」
제50조(사회적 할인율)에 따라 4.5%를 적용

② 대수선비 등 비반복비용

- 기자재 내구연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(기자재별로 취합)

③ 유지관리비 계

구분	LCC산정(현재가치법)	구분
반복비용(recurring cost) : A	$((1+\text{할인율})^{\text{연한}}-1) \div (\text{할인율} \times (1+\text{할인율})^{\text{연한}}) \times A$	①
비반복비용(nonrecurring cost) : B	$\Sigma (1/(1+\text{할인율})^{\text{연한}} \times B)$	②
총 유지관리비(현재가치법)	① + ②	
- A = 전력비, 약품비, 슬러지처리비, 경상수선비, 기타 등 반복비용(연간비용) - B = 기자재 내구연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(비반복비용) ※ 유지관리비, 대수선비 산정기간 : 20년, 산정시 할인율 = 4.5%		

○ 배점기준

구분	90%미만	90%이상 ~ 100%미만	100%이상 ~ 110%미만	110%이상 ~ 120%미만	120%이상
점수	18.0	16.2	14.4	12.6	10.8

6. 에너지사용 저감계획(15점)

1) 에너지 사용량(10점) : 기관평가(절대평가)

- 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
(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)

- 비율 = (해당공법 에너지사용량 ÷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사용량) × 100

○ 배점기준

구분	90%미만	90%이상 ~ 100%미만	100%이상 ~ 110%미만	110%이상 ~ 120%미만	120%이상
점수	10.0	9.0	8.0	7.0	6.0

2)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(5점) : 기관평가(절대평가)

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-148호)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비율을 평가
 -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-148호) 【별표 1】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적용
- 제안된 에너지사용량 중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
 - 비율 = (해당공법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에너지사용비율 ÷ 제안공법 평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에너지사용비율) × 100
 -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시 관련 근거자료 제출 (관련근거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)
- ※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인증받은 제품의 적용비율 기준으로 분석 평가
- 배점기준

구분	90%이상	70%이상 ~ 90%미만	50%이상 ~ 70%미만	30%이상 ~ 50%미만	30%미만
점수	5.0	4.5	4.0	3.5	3.0

7. 감점사항

1) 제안서 작성 관련 감점기준

-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**0.2점 감점**(감점상한 1.0점)
 - 제안서 기준페이지(100page) 초과시 1페이지당 **0.2점 감점**(감점상한 1.0점)
 - ※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시는 무방하며, 보고서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하고 표지, 목차, 평가조건표, 간지는 페이지수에 미포함하며, 페이지 숫자가 하단에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쇄내용이 전혀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
 - 제안서 규격,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**0.2점 감점**(감점상한 1.0점)

- 제안서내 사진을 직접(부착)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(A4기준)마다 **0.2점 감점**(감점상한 1.0점)
-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(칼라사용 금지), 위반시 1페이지(A4기준)마다 **0.2점 감점**(감점상한 1.0점)
- 용량계산서, 수리계산서, 공사비 산출근거,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미제출시 1목록당 **0.5점 감점**(감점상한 2.0점)
- ※ 용량계산서(물질수지도 포함)는 수식이 연결된 엑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, 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시 **0.5점 감점** 처리함.
-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을 미준수하여 산출시 1건당 **0.2점 감점**(감점상한 2.0점)

2)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 관련 감점기준

- 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, 인적 손실이 크고 공법선정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합니다.
- 제안서 제출업체가 CD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**5점 감점**

3) 제안서 신뢰성 관련 감점기준

-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,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%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합니다.
- 초과비율 : $[(\text{재검토 공사비} - \text{제안 공사비}) / \text{제안 공사비}] \times 100\%$
- 15% 초과 ~ 20% 이하 : 5점 감점
- 20% 초과 : 10점 감점

4) 평가배제 또는 선정무효

-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